

싱가포르 선박登記 안내

[싱가포르 선박登記소\(Singapore Registry of Ships\)](#)에서 싱가포르 국적기의 선박을 쉽고 빠르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. [싱가포르 국적기로 선박을 등록하면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.](#) 모든 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한 후 2 시간 이내에 선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. 사전 등록 제도를 이용하여 외국 항구에서 선박을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. 이 섹션에서는 선박 소유주들에게 싱가포르 국적기의 선박을 등록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. 선박 소유주는 선박을 등록하기 전 [상선법\(Merchant Shipping Act\) 2 부와 상선\(선박 등록\) 규정\(1996 년, Merchant Shipping \(Registration of Ships\) 1996\)](#)을 참조해야 합니다.

- [선박 등록 개요](#)
- [선박 등록의 전제 조건](#)
- [임시 등록](#)
- [영구 등록](#)
- [재등록\(소유권 변경 또는 선박 개조\)](#)
- [저당권 등록](#)
- [매도 증서 등록](#)
- [등기 완료](#)
- [나용선 계약](#)
- [추가 정보\(소유권 공유, 저당권, 면세 등\)](#)
- [수수료](#)

선박登記 절차 개요

[싱가포르 선박登記소\(Singapore Registry of Ships\)](#)에 선박을登記하는 절차는 빠르고 간편하여 다섯 단계만 거치면 됩니다. 모든 종류의 선박을登記할 수 있습니다.

등기 절차

아래는 선박登記 단계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입니다.

1 단계 – 전제 조건

귀하와 귀하의 선박이 [소유자 및 선박 전제 조건](#)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.

2 단계 – 선박登記 담당자에게 신청서 작성

선박登記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써서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.

- 귀하가 고른 [선박 이름](#)에 대한 승인을 얻습니다.
 - [이름 예약](#)을 요청하는 경우,
 - 신청서에 이를 명시합니다.
 - 예약한 이름을 갖게 될 선박의 이름을 등기소에 알립니다.
 - [이미 등기된 선박의 이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](#) 신청서에 이를 명시합니다.
- 선박 번호와 [호출 부호 숫자/신호 문자](#)를 신청합니다.
 - 신청서에 선박 톤수를 명기합니다.
- 해당하는 경우, [대량 이전 제도\(Block Transfer Scheme\)](#)에 따라 신청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합니다.

3 단계 – 서류 제출

[입시 등기](#) 또는 [영구 등기](#)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.

4 단계 – 수수료 납부

최초 등기 [수수료](#)와 [연간 톤세](#)를 납부합니다.

5 단계 – 선박 등기 완료!

선박 등기가 끝나면 선적 증명서와 카빙 및 화인표시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.

[싱가포르 국적으로 선박 등기하기](#)

- [선박 등기 개요](#)
- [선박 등기의 전제 조건](#)
- [입시 등기](#)
- [영구 등기](#)
- [재등기\(소유권 변경 또는 선박 개조\)](#)
- [저당권 등록](#)
- [매도 증서 등록](#)
- [등기 완료](#)
- [나용선 계약](#)
- [추가 정보](#)
- [수수료](#)

필요할 수 있는 항목

e-서비스 [선박 등기 수수료 계산기](#)

관련 페이지 [우수 선박 등기, 싱가포르에서 선박 등기하기](#)

싱가포르에서 선박을 등기할 때 필요한 전제 조건

싱가포르에서 선박을 등기하려면, 다음 전제 조건을 먼저 만족해야 합니다.

선박 소유자

- 다음과 같은 사람만 싱가포르 선박의 소유자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.
 -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
 - 외국인 또는 현지인 소유의 싱가포르 내 법인 회사
 - 외국인 소유 회사란 싱가포르에 소재한 법인 회사로 정의하며, 자본의 50% 이상을 싱가포르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합니다.
 - 현지인 소유 회사란 싱가포르에 소재한 법인 회사로 정의하며, 자본의 50% 이상을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또 다른 현지인 소유 회사가 소유합니다.
- **외국인 소유 회사**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,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싱가포르에서 선박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.
 - 회사의 최소 불입 자본이 **S\$50,000** 여야 합니다.
 - 선박의 최소 총톤수가 **1,600GT** 이며 자체 추진식이어야 합니다.
 - 최소 불입 자본 요건에도 불구하고 등기 담당자는 재량에 따라 이 요건을 무시할 수 있는데, 이는 회사 또는 회사와 관련된 법인이 [대량 이전 제도\(Block Transfer Scheme\)](#)의 톤수 기준을 만족하는 선박을 등기했거나, 등기 신청을 했거나, 등기 신청을 할 것이라고 등기 담당자에게 통보한 경우에 한합니다.
 - 총톤수(GT) 요건의 면제는 등기 담당자의 단독 재량에 따라 사례별로 부여할 수 있는데, 이는 싱가포르에서 선박을 사용하거나 선박이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는 경우에 한합니다. 소유자는 이러한 면제를 등기 담당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.
- **현지인 소유 회사**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, 회사가 최소 불입 자본 요건을 만족하면 싱가포르에서 선박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.
- **예인선 또는 바지선을 소유한 현지인 회사와 그 지주 회사**의 경우, 불입 자본을 최초 등기된 예인선 또는 바지선이 지닌 가치의 10%와 **S\$50,000** 중 낮은 금액으로 안정시키되, 최소 불입 자본을 **S\$10,000** 로 잡습니다.

선박

- 일반적으로 17년 미만 선박에 대해 등기를 고려합니다.

싱가포르에서 선박을 임시 등기할 때 신청 절차

선박을 임시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.

임시 증명서는 최대 1년 동안 유효하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. 선박은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구 등기부로 이전해야 합니다. 영구 등기를 위한 미결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이전이 발효됩니다.

이러한 이전에는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.

임시 등기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작성한 신청서(아래 세부정보 참조).
- 회사의 비즈니스 프로필(아래 세부정보 참조).

신청서

- [임시 등기 신청서](#)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.
 - 선박 **소유자가 개인인** 경우, 신청서의 신고서에 개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습니다.
 - **소유자가 법인인** 경우, 신청서에 법인 이사 또는 총무가 서명할 수 있습니다.
- 신고서는 선박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취득한 당일 또는 그 이후에 작성해야 합니다.
- 신고서는 해양국장, 선박 검사관, 치안 판사, 선서 입회관 또는 싱가포르의 유효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앞에서 작성해야 합니다.
- **선일자 선적 증명서** 발급을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, 신고자의 서명을 제외하고 작성한 신청서를 증명서 취합일로부터 최소 **3**업무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. 등기 당일, 신고자는 출석하여 자신의 서명을 증명하고 신고서에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.

비즈니스 프로필

비즈니스 프로필은 [ACRA\(기업회계등록청\)](#)에 신고된 회사의 세부사항을 적어놓은 것입니다.

- 선박 **소유자가 싱가포르 소재 법인 회사인** 경우,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.

- ACRA 의 Instant Information Service(즉시 정보 서비스)에서 발행된 회사 관련 컴퓨터 출력물을 제출하되 여기에 진술서 컴퓨터 출력 증명서(Certificate of Production of Statement by Computer)를 첨부합니다. 제출할 컴퓨터 출력물은 최근이거나 선박 등기일로부터 최소 3 개월 전 날짜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. (선박 소유자는 등기를 위해 선박 등기소 창구에서 비즈니스 프로필 컴퓨터 보고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은 선박 등기일로부터 최소 3 업무일 전에 해야 합니다. 비즈니스 프로필 출력 수수료는 건당 GST 포함 S\$5.00 입니다.)
- 비즈니스 프로필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.
 - 정관
 - 이사, 관리자, 총무에 대한 세부사항이 담긴 연간 신고서(최신 연간 신고서 또는 Form 49). 연간 신고서는 iShop@ACRA 아래 www.bizfile.gov.sg 에서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.
 - 주식 배정 신고서(최신 연간 신고서 또는 Form 24). 연간 신고서는 iShop@ACRA 아래 www.bizfile.gov.sg 에서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.
- 소유자는 **선박 관련 세부사항이 변경될** 경우, 변경 30 일 내에 선박 등기 담당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. 이와 같이 통보시에는 항상 적절한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.
- **소유자가 회사인** 경우, 소유자가 현지인 소유 회사인지 외국인 소유 회사인지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만 직접 및 간접 주식 보유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. 이 정보는 회사의 이름과 주소를 제외하고 엄격히 기밀로 취급합니다.

대리인 지정

임시 등기 신청서 내 신고서에 서명할 때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. 대리인 지정을 위해 소유자는 [대리인 지정서](#)를 작성해야 합니다.

- **소유자가 개인인** 경우,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소유자는 증인 앞에서 지정서에 서명해야 합니다.
- **소유자가 회사이고** 임시 등기 신청서에 회사 이사 또는 총무가 서명하지 않는 경우, 신청서 서명을 위해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. 대리인 지정은 회사 인감 날인으로 시행해야 합니다.

관리자 지정

선박 관리자는 선박 운영, 특히 선원, 안전 및 오염 방지 관련 제반 사항을 책임집니다. 선박과 관계된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관리자에게 보냅니다.

관리자 지정을 위해 소유자는 [관리자 지정서](#)를 작성해야 합니다.

- 싱가포르 선박마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관리자를 한 명씩 지정해야 합니다.
 - **소유자가 개인인** 경우, 본인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 - **소유자가 회사인** 경우, 회사 직원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 - **회사를 관리자로 지정**하는 경우, 선박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지는 회사 내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회사 내 직함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.

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, 선박 소유자는 새 양식을 작성하여 변경 7일 내에 이를 선박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.

소유권 증명

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**새 선박**의 경우, 건조 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.
- **기존 선박**의 경우, 매도 증서 사본 또는 소유권을 나타내는 기타 유사 서류가 필요합니다.

선박의 가치

선박의 가치가 다른 제출 서류(즉 매도 증서)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소유자는 회사 레터헤드에 싱가포르 달러화(S\$)로 선박의 가치를 신고해야 합니다.

톤수 증명서

모든 선박은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 협약(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nnage Measurement of Ships, TM 69)을 실시하는 상선(톤수) 규정의 조항에 따라 톤수를 측정해야 합니다.

- 톤수 증명서는 싱가포르 해운항만청(MPA)의 운송 부문 또는 MPA에 의해 공인된 선급 협회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.
- 계약국의 정부에서 발급하는 **TM 69** 톤수 증명서는 임시 등기에 한해 허용할 수 있습니다. 선박의 톤수 증명서는 늦어도 최초 등기로부터 1년 내에 MPA의 운송 부문 또는 공인된 선급 협회에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. 순톤수(NT)에 차이가 있는 경우, 그에 따라 등기 수수료와 지불해야 하는 연간 톤세를 조정합니다.
- 싱가포르 선박의 톤수는 상기 규정의 조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재측정할 수 없으며, [재등기](#)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선박을 등기한 후 사용하기 전에 용도 변경하거나 개조할 의도라면, 써놓은 톤수가 임시 수치임을 신청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.

- 신건조 선박의 경우, MPA의 운송 부문 또는 공인된 선급 협회에서 발급하는 임시 톤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
선급 증명서

- [공인된 선급 협회](#)에서 발급하는 선박의 선급 증명서 사본은 내항성 증명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.
 - **새 선박**의 경우, 임시 선급 증명서 또는 가입 진술서가 필요합니다.
 - **기존 선박**의 경우, 선급 유지 진술서가 필요합니다.

임시 등기 허가

- 상기 요건을 만족하는 즉시, 선적 증명서와 카빙 및 화인표시 서류가 발급됩니다.
- **카빙 및 화인표시 서류**는 MPA의 운송 부문 또는 공인된 선급 협회의 검사관에게 인증을 받고 발급일로부터 **30일** 내에 등기소에 반환해야 합니다.

제출 서류 체크리스트

선박 임시 등기를 위한 관련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이 [체크리스트](#)를 이용하십시오.

[싱가포르 국적으로 선박 등기하기](#)

- [선박 등기 개요](#)
- [선박 등기의 전제 조건](#)
- [임시 등기](#)
- [영구 등기](#)
- [재등기\(소유권 변경 또는 선박 개조\)](#)
- [저당권 등록](#)
- [매도 증서 등록](#)
- [등기 폐쇄](#)
- [나용선 계약](#)
- [추가 정보](#)
- [수수료](#)

필요할 수 있는 항목

양식 [Form 49, Form 24, 싱가포르 선박으로 등기 신청](#)

양식 [대리인 임명, 관리자 임명, 선박 등기를 위한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](#)

관련 정보 [ACRA\(기업회계등록청\)](#)

싱가포르에서 선박 영구 등기시 절차

임시 등기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선박을 영구적으로 등기하거나 영구 등기부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.

소유권 증명

- 소유권 증명의 원본이 필요합니다.
 - **새 선박**의 경우, 건조 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 - **기존 선박**의 경우, 매도 증서 및 구등기 인증 등본 또는 이전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기타 유사 서류가 필요합니다.
- **중도에 소유권 변경**이 생기는 경우, 중간의 매도 증서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. 소유권의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.
- **싱가포르 외 지역에서 작성한 건조 증명서 또는 매도 증서**는 공증하여 합법화해야 합니다. 작성자가 싱가포르 현지인이 아닌데 싱가포르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, 작성자의 확인서 또는 서류 공증이 필요합니다.
- 매도 증서 또는 건조 증명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선주에게 유효한 소유권이 이전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선주의 책임입니다.
- 소유권 서류 원본을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 원본 서류는 등기 절차를 완료한 후 이서하여 반환합니다.

톤수 증명서

- MPA 의 운송 부문 또는 공인된 선급 협회에서 발급하는 전체 기간 톤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 - 모든 선박은 1969 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 협약(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nnage Measurement of Ships, TM 69)을 실시하는 상선(톤수) 규정의 조항에 따라 톤수를 측정해야 합니다.

선급 증명서

- 공인된 선급 협회에서 발급하는 전체 기간 선급 증명서 사본은 내항성 증명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.

법정 증명서

- 해당하는 경우, 선주는 다음과 같은 선박의 유효한 법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 - 여객선 안전, 화물선 안전 건조, 화물선 안전 장비, 화물선 안전 무선 전신/무선 전화
 - 국제 만재 흡수선/국내 견현
 - 국제/싱가포르 유류 오염 방지

- 유해 액체 물질
- 적합성 증서
- 30 마일/항구 제한 여객선 안전 증서
- 안전관리적합증서(DOC)
- 선박안전관리증서(SMC)
- 국제선박보안증서(ISSC)
- 위 증서는 MPA 의 운송 부문 또는 공인된 선급 협회에서 발급해야 합니다.

구등기 취소 증명

- 어느 시점에서든 다른 나라에서 선박을 등기한 경우, 구등기 취소 증명이 필요합니다.
 - 증명은 국적말소증명서 또는 구등기 “폐쇄” 등본 형태일 수 있습니다.
 - 원본 서류가 필요합니다.
- 의무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구등기에서 말소된 선박은 등기를 불허합니다.

카빙 및 화인표시 인증 서류

MPA 의 운송 부문 또는 공인된 선급 협회의 검사관에게 인증을 받은 카빙 및 화인표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0 일 내에 등기소에 반환해야 합니다.

등기 허가

-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즉시, 선박은 영구 등기부로 이전되고 선적 증명서가 발급됩니다.
- 이러한 이전에는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.
- 선박 관리자는 임시 선적 증명서를 교환하여 영구 선적 증명서를 수령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.
- 수령시 임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, 향후 30 일 내에 임시 증명서를 반환하겠다는 공식 서한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제출 서류 체크리스트

선박 임시 등기를 위한 관련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이 [체크리스트](#)를 이용하십시오.

[싱가포르 국적으로 선박 등기하기](#)

- [선박 등기 개요](#)
- [선박 등기의 전제 조건](#)

- [임시 등기](#)
- [영구 등기](#)
- [재등기\(소유권 변경 또는 선박 개조\)](#)
- [저당권 등록](#)
- [매도 증서 등록](#)
- [등기 폐쇄](#)
- [나용선 계약](#)
- [추가 정보](#)
- [수수료](#)

필요할 수 있는 항목

양식 [선박 등기를 위한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](#)

선박 재등기 절차(소유권 변경 또는 선박 개조시)

선박 소유권에 변경이 생기거나 선박을 크게 개조하는 경우 재등기가 필요합니다.

소유권 변경

새 선주는 [등기의 전제 조건](#)을 만족해야 합니다.

소유권 변경시 재등기 절차

- 필요한 경우, [선박 이름](#)에 대한 승인을 얻습니다.
- [신청서](#)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합니다.
-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.
 - 회사의 세부사항을 적어놓은 비즈니스 프로필 보고서
 - 필요한 경우, 작성한 [대리인 임명 신청서](#)
 - 필요한 경우, 작성한 [관리자 임명 신청서](#)
 - 작성한 [매도 증서](#)
 - 해당하는 경우, 선박의 이름 변경시 카빙 및 화인표시 인증 서류
 - 매도 증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, 싱가포르 달러화(S\$)로 표시한 선박의 가치
-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지불합니다.
 - 근사치 순톤수(NT) 1 톤당 S\$1.25 의 재등기 수수료(최소 S\$1,250, 최대 S\$6,000).
 - 근사치 순톤수(NT) 1 톤당 S\$0.20 의 연간 톤세(최소 S\$100(500NT), 최대 S\$10,000.00(50,000NT)).

선박 개조

- 다음 부분을 개조하는 경우 선박을 재등기해야 합니다.
 - 인접 공간의 길이, 너비, 깊이 또는 치수에 영향을 미치는 선체 또는 구조
 - 추진 수단
 - 선박이 선적 증명서에 있는 설명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
- 선박을 개조 또는 변경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해당 사례에 대해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.

선박 개조시 재등기 절차

- [신청서](#)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합니다.
-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.
 - 필요한 경우, 작성한 [대리인 임명 신청서](#)
 - 필요한 경우, 작성한 [관리자 임명 신청서](#)

- 톤수가 변경된 경우, 톤수 증명서
- 내항성 증명
- 해당하는 경우, 선박의 이름이 변경되었음을 나타내는 카빙 및 화인표시 인증 서류
-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지불합니다.
 - 근사치 순톤수(NT) 1 톤당 S\$0.20 의 연간 톤세(최소 S\$100(500NT), 최대 S\$10,000(50,000NT)).
 - 재등기 수수료:

S\$2.50 x (NTa - NTo) 또는 S\$50,000 - 2.50 x NT 중에 낮은 금액으로 하며, 최소는 S\$1,250)입니다. 여기서,

NTa = 개조 후의 NT 이고,

NTo = 이전 등기(즉 최초 등기 또는 이전 재등기)에서의 NT 입니다.

임시 등기 허가

-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즉시, 선적 증명서가 발급됩니다.
- 기존 선적 증명서는 새 선적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 일 내에 등기소에 반환하거나 반환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.

선박 저당권 등기 절차.

등기부에 저당권 등기하기

- 저당권 문서(싱가포르 선박 등기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)를 제출하면, 선박을 등기하자마자 등기부에 선박의 저당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.
- 소유권 서류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임시 등기 선박의 경우, 저당권자가 해당 서류를 보았음을 확인해 준 다음에만 저당권을 등록합니다.

수수료

- 저당권을 등록하고 이전하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 수수료는 선박의 총톤수(GT) 또는 지분에 따라 (S\$48 + 100GT 당 S\$1 추가) 또는 그 일부가 청구됩니다. 일반적인 GST(물품세)는 이 금액에 과세됩니다. (현재 GST 는 7%입니다.)
- 저당권 소멸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.

등기 시간

- 근무 시간은 월~금요일, 오전 8 시~오후 5 시 30 분입니다.
- 근무 시간 후 저당권을 등록 또는 소멸시키는 서비스가 필요하면, 선박 등기소 직원과 사전에 약속을 해야 합니다.

매도 증서 등록 절차

매도 증서는 싱가포르 선박의 소유권 또는 그 지분이 이전될 때 작성합니다. 매도 증서는 소유권 변경시 선박 재등기를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.

- [매도 증서](#)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.
- 싱가포르 선박 또는 그 지분의 이전에 대한 모든 매도 증서는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며, 매도 증서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제출 순으로 등록합니다.
- **양수인이 싱가포르 선박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사람**이면, ([선박 등기의 전제 조건](#) 참조):
 - 매도 증서가 소정의 양식이어야 합니다.
 - 매도 증서(또는 매도 증서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첫 번째 매도 증서)를 등록한 지 60 일 내에 선박을 재등기해야 합니다. 그러지 않으면 법률 시행으로 등기가 폐쇄됩니다.
 - 유효한 저당권(저당권자가 서면 동의하지 않은 경우), 미지급 수수료, 선장 또는 선원의 미지급 보험금이 있거나 선박 매매를 금지하는 유효한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, 매도 증서를 등록하지 않습니다.
- 양수인이 [싱가포르 선박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사람](#)이 아니면,
 - 매도 증서를 등록하는 경우 등기가 폐쇄됩니다.
 - 선적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도 증서 등록일로부터 60 일 내에 넘겨줘야 합니다.
 - 유효한 저당권(저당권자가 서면 동의하지 않은 경우), 미지급 수수료, 선장 또는 선원의 미지급 보험금이 있거나 선박 매매를 금지하는 유효한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, 매도 증서를 등록하지 않습니다.
- 매도 증서를 등록하려면 S\$5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.

선박 등기 폐쇄 절차

- 선박 등기를 폐쇄하려는 선주는 다음 사항이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.
 - 소멸되지 않은 저당권
 - 선박 또는 그 지분의 매매를 금지하는 법원 명령
 - 미지급 연간 톤세 또는 기타 수수료
 - 선장 또는 선원의 미지급 보험금

• 다음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.

- 예정된 항구와 선박국 또는 그 반대(즉, 선박이 다른 국가로 향하고 있지 않음. 예를 들어, 노후 선박의 해체, 폐선, 전손 등)를 명시한 신청서와 폐쇄 이유
- 선적 증명서 원본 또는 앞으로 30 일 내에 이 증명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하는 서한 이 서한을 받을 때까지 선박 등기가 폐쇄되지 않습니다.
- 매도와 관련이 없는 경우, 등록을 위한 [매도 증서](#) 원본

선주는 선박이 사라지거나(실체든 추정이든) 불에 타거나 부서졌는지 등기관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.

제출 서류 체크리스트

선박 등기 폐쇄를 위한 관련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이 [체크리스트](#)를 이용하십시오.

[싱가포르 국적으로 선박 등기하기](#)

- [선박 등기 개요](#)
- [선박 등기의 전제 조건](#)
- [임시 등기](#)
- [영구 등기](#)
- [재등기\(소유권 변경 또는 선박 개조\)](#)
- [저당권 등록](#)
- [매도 증서 등록](#)
- [등기 폐쇄](#)
- [나용선 계약](#)
- [추가 정보](#)
- [수수료](#)

필요할 수 있는 항목

양식 [선박 등기 폐쇄를 위한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](#)

Forms

나용선 계약 절차

나용선 계약은 선박을 소유, 통제하는 규정 기간 동안 선박을 고용하는 것으로, 용선 계약자가 선장과 선원을 임명하는 권리를 포함합니다.

싱가포르 선박은 나용선 계약이란 이름으로 싱가포르 외 지역에서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.

선박의 싱가포르 등기는 용선 계약 기간 동안 보류해야 합니다.

보류 신청

선주 또는 선주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보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
- [등기 보류 신청서](#)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합니다.
-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.
 - 용선 계약 당사자의 인증 사본
 - 등기부 인증 등본 또는 선박의 나용선 등기를 나타내는 유사 서류
 - 선박의 싱가포르 선적 증명서
- 신청 수수료는 **S\$1,250**입니다.
- 등기부 인증 등본/선박의 나용선 등기를 나타내는 유사 서류, 싱가포르 선적 증명서와 같은 필요 서류를 신청서에 동봉하지 않는 경우, 등기가 임시 보류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서류는 임시 보류일로부터 **60** 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 그러지 않으면, 임시 보류가 종료되고 효력이 중지됩니다.
- e provisional suspension will be terminated and cease to have effect.

보류 연장 신청

보류 기간의 종료일은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- [등기 보류 연장 신청서](#)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합니다.
-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.
 - 연장 또는 새 용선 계약 당사자의 인증 사본
 - 등기부 인증 등본 또는 선박의 나용선 등기 연장을 나타내는 유사 서류
- 보류 연장 신청 수수료는 **S\$1,250**입니다.

재개 신청

싱가포르 선박의 보류된 등기는 신청 즉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.

- [보류된 등기 재개 신청서](#)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합니다.
-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.
 - 폐쇄 증명서 또는 선박의 나용선 등기와 관련한 유사 서류
 - 선급 협회의 선급 유지 진술서
 - 유효한 법정 증명서 사본
- 재개 신청 수수료는 **S\$1,250**입니다. 폐쇄 증명서/선박의 나용선 등기와 관련한 유사 서류를 신청서에 동봉하지 않은 경우, 보류가 임시 재개될 수 있습니다. 그런 다음 임시 종료일로부터 **60**일 내에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그러지 않으면, 임시 재개의 효력이 중지됩니다.
- 싱가포르 선박의 보류된 등기에 대해 보류 종료일로부터 **60**일 내에 재개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임시 재개의 효력이 중지되는 경우, 선박 등기는 유효한 저당권을 제외하고 자동 폐쇄됩니다.

보류 기간 동안 적용되는 규정

싱가포르 선박의 등기 보류 기간 동안, [상선법](#) 조항과 그 규정은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이 중지됩니다.

- 상선법 2부에 있는 선박의 저당권과 재산 관련 조항
- 선박 등기 관련 조항
- 선박의 연간 톤세에 대한 계속된 지불 관련 조항

[싱가포르 국적으로 선박 등기하기](#)

- [선박 등기 개요](#)
- [선박 등기의 전제 조건](#)
- [임시 등기](#)
- [영구 등기](#)
- [재등기\(소유권 변경 또는 선박 개조\)](#)
- [저당권 등록](#)
- [매도 증서 등록](#)
- [등기 폐쇄](#)
- [나용선 계약](#)
- [추가 정보](#)
- [수수료](#)

필요할 수 있는 항목

양식 [싱가포르 선박의 등기 보류 신청](#)

양식 [싱가포르 선박의 등기 보류 연장 신청](#)

양식 [싱가포르 선박의 등기 재개 신청](#)

법률 [상선법](#)

선박 등기와 관련된 추가 정보(소유권, 지분, 저당권, 면세 등)

선박 등기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아래 나와 있습니다.

- [선박 이름](#)
- [선박 이름 예약](#)
- [선박 이름 변경](#)
- [호출 부호/신호 문자](#)
- [대량 이전 제도](#)
- [수수료](#)
- [연간 톤세](#)
- [선박의 소유권과 지분](#)
- [저당권 우선순위](#)
- [인증된 영어 번역](#)
- [위임장 사용](#)
- [면세](#)
- [어선, 목선, 수중익선](#)
- [공인된 선급 협회](#)
- [선박 등기관 연락처](#)

선박 이름

- 싱가포르 선박에 사용하는 모든 이름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이는 구등기의 선박 이름에 변경이 없을 때에도 해당합니다.
- 선박 이름 신청은 이름이 없을 경우를 고려하여 최소 2 주 전에 해야 합니다.
- 승인을 위해 선박 이름을 둘 이상 제출할 수 있지만 우선권의 순서를 분명히 나타내야 합니다.
- 승인된 이름은 1 년 동안 유효합니다.

선박 이름 예약

- 싱가포르 선박의 기존 이름은 선주가 교체 선박에 사용하기 위해 10 년 동안 예약할 수 있습니다.
- 예약한 이름을 갖게 될 교체 선박의 이름을 등기소에 알립니다.

선박 이름 변경

- 이미 싱가포르 선박으로 등기되어 있거나 등기될 예정인 선박 이름을 변경하려면, 등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
- 새 이름을 승인받는 즉시, 등기소에서 선적 증명서에 대한 수정지와 카빙 및 확인표시 서류가 발급됩니다.
- **카빙 및 확인표시 서류**는 선박의 선급 협회에서 인증을 받고 발급일로부터 30 일 내에 등기소에 반환해야 합니다.
- 선박 이름의 변경 승인에 대해 S\$26 의 수수료가 청구됩니다.

호출 부호/신호 문자

- 신청서에 선박의 총톤수(GT)를 명시합니다.
- 선박에 무선국을 설치하거나 설치해야 하는 경우,
 - 호출 부호/신호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, 선주는 [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청\(IDA\)](#)에 선박에 탑재하는 무선국을 운영할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.
 - [GMDSS](#) 가 장착된 선박은 [싱가포르텔레콤\(Singapore Telecommunications Limited\)](#)의 국제 모바일 서비스 부서에서 해상이동업무 식별번호(MMSI Number)를 얻어야 합니다.

대량 이전 제도

- 이 제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선박을 적당한 기간 내에 등기하는 선주에게 적용됩니다.
 - 톤수 합계가 40,000NT 인 선박 2 척
 - 톤수 합계가 30,000NT 인 선박 3 척
 - 톤수 합계가 20,000NT 인 선박 4 척
 - 선박 5 척(톤수 합계 무관)
- 선주는 첫 선박을 등기하기 전에 **대량 이전 제도(Block Transfer Scheme)**에 따라 고려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.
- 선주는 선박의 총수, 각 선박의 순톤수, 각 선박의 대략적인 등기일을 명시해야 합니다.

수수료

- **일반 등기** 수수료는 근사치 순톤수(NT) 1 톤당 S\$2.50 이며, 최소 S\$1,250(500NT)이고 최대 S\$50,000(20,000NT)입니다.
- 대량 이전 제도에 따른 등기 수수료는 순톤수(NT) 1 톤당 S\$0.50 이며, 최소는 선박 1 척당 S\$1,250 (2,500 NT)이고 최대는 S\$20,000 (40,000 NT)입니다.
- 기타 청구액은 [수수료](#) 전체 목록을 참조하십시오.

연간 톤세

- 연간 톤세는 근사치 순톤수(NT) 1 톤당 S\$0.20 이며, 최소는 S\$100(500NT)이고 최대는 S\$10,000(50,000NT)입니다.

- 연간 톤세는 최초 등기 또는 재등기시, 그리고 그 후에는 매년 선박의 등기 또는 재등기 매주년 당일이나 그 전(경우에 따라)에 지불해야 합니다.
- 세금이 지불된 연도에 어떤 이유로든 선박 등기가 폐쇄되는 경우, 세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
선박의 소유권과 지분

- 싱가포르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 회사만 선박 또는 그 지분의 단독 또는 공동 소유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
- 선박의 아주 적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등록하지 않습니다.
- 다섯을 넘지 않는 개인 또는 회사 수는 지분(하나 또는 둘 이상)의 공동 소유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
- 싱가포르 선박 내 재산은 몇 개의 지분으로든 분할할 수 있으며, 선박을 등기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지분 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. 소유자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지 않는 한 선박을 64 개의 지분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.

저당권 우선순위

- 동일 선박이나 지분과 관련하여 유효한 저당권이 둘 이상 있는 경우, 저당권자는 명시적, 묵시적 또는 추정적 통고에도 불구하고, 각 저당권의 일자 자체가 아닌 선명록에 있는 각 저당권의 등록 일자과 시간에 따라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우선권이 있어야 합니다.

인증된 영어 번역

- 등기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영문이어야 합니다.
- 서류가 영문이 아닌 경우, 인증된 영어 번역본을 동봉해야 합니다.

위임장 사용

- 매도 증서, 저당 증서, 저당권 이전 또는 소멸 증서는 합법적으로 임명된 변호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.
- 싱가포르 외 지역에서 작성한 위임장은 공증하여 합법화해야 합니다.
- 작성자가 싱가포르 현지인이 아닌데 싱가포르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, 작성자의 확인서 또는 서류 공증이 필요합니다. 원본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 원본은 번역 완료 후 반환됩니다.
- 저당권 소멸 사례에 한해, 인증된 위임장 진본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.

면세

- 싱가포르 선박을 운영하며 얻는 수익은 싱가포르 소득세가 면제됩니다.
- 이 면제는 국제 수역에서 싱가포르 외항선으로 승객, 우편물, 가축 또는 상품을 운송하며 얻는 소득에 적용되며, 이러한 선박의 용선 계약에서 얻은 소득을 포함합니다.
-

이 문제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직접 해주십시오.

The Commissioner of Inland Revenue
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
55 Newton Road, Revenue House
Singapore 307987
전화: 1800-3568622
웹 사이트: <http://iras.gov.sg>

어선, 목선, 수중익선

어선, 목선, 수중익선은 등기를 불허합니다.

공인된 선급 협회

- 다음 선급 협회는 싱가포르 선박의 톤수 설문조사, 인증 및 측정에서 싱가포르 정부를 대행해왔으며, 국제안전관리규약(ISM Code)과 관련한 감사와 인증을 실시합니다.
 - 미국선급협회
 - 프랑스선급협회
 - 중국선급협회
 - 노르웨이선급협회
 - 독일선급협회
 - 한국선급협회
 - 영국선급협회
 - 일본해사협회
 - 이탈리아선급협회

- 위 선급 협회는 모두 보안인증심사대행기관(Recognised Security Organisation, RSO)으로 선정되었습니다.

선박 등기관 연락처

[여기를 클릭하십시오.](#)

[Click here.](#)

[싱가포르 국적으로 선박 등기하기](#)

- [선박 등기 개요](#)
- [선박 등기의 전제 조건](#)
- [임시 등기](#)
- [영구 등기](#)
- [재등기\(소유권 변경 또는 선박 개조\)](#)
- [저당권 등록](#)
- [매도 증서 등록](#)
- [등기 폐쇄](#)
- [나용선 계약](#)
- [추가 정보](#)
- [수수료](#)

필요할 수 있는 항목

관련 [GMDSS](#)

페이지

관련 정보 [싱가포르 정보통신청\(IDA\), 싱가포르텔레콤\(Singapore Telecommunications Limited\), 싱가포르 국세청\(IRAS\)](#)

다양한 수수료 목록

아래 나열된 수수료는 싱가포르 달러화(S\$)로 표시한 것입니다.

선박 등기 수수료를 즉시 계산하려면, 빠르고 간편한 선박 [등기 수수료 계산기](#)를 이용하십시오.

최초 등기 수수료

순톤수(NT) 1 톤당 S\$2.50 이며, 최소 S\$1,250(500NT), 최대 S\$50,000(20,000NT)입니다.

대량 이전 제도

순톤수(NT) 1 톤당 S\$0.50 이며, 선박 1 척당 최소 S\$1,250, 최대 S\$20,000 입니다.

소유권 변경시 재등기

순톤수(NT) 1 톤당 S\$1.25 이며, 최소 S\$1,250(1,000NT), 최대 S\$6,000(4,800NT)입니다.

선박 개조시 재등기

$S\$2.50 \times (NT_a - NT_o)$ 또는 $S\$50,000 - S\$2.50 \times NT_o$

둘 중 적은 금액으로 하며, 최소는 S\$1,250 입니다.

NT_a = 개조 후의 NT

NT_o = 이전 등기(즉, 최초 등기 또는 이전 재등기)에서의 NT

연간 톤세

순톤수(NT) 1 톤당 S\$0.20 이며, 최소 S\$100(500NT), 최대 S\$10,000(50,000NT)입니다.

등기 보류/보류 연장/재개/나용선 계약

적용 1 건당 S\$1,250

.

저당권 등록 및 이전

(S\$48 + 100GT 당 S\$1 추가) 또는 그 일부(GST 7% 기준)

유람선의 최초 등기

등기 1 건당 S\$200

유람선 등기의 연간 갱신

S\$50

선박 등기 검사

검사 1 건당 S\$10(GST 7% 기준)

인증된 선박 등기부 등본

등본 1 장당 S\$14(GST 7% 기준)

선박의 선적 증명서 교체

교체 사본 1 장당 S\$30(GST 7% 기준)

선박 이름의 변경 승인

변경 1 건당 S\$26

선명록 또는 선적 증명서에 있는 선박의 세부사항 수정

수정 1 건당 S\$14

매도 증서 등록

등록 1 건당 S\$50

말소 증명서

증명서 1 장당 S\$14

비즈니스 프로파일 출력물

회사별로 S\$5

선박이력기록부 (Continuous Synopsis Record, CSR)

CSR 별로 S\$45

[싱가포르 국적으로 선박 등기하기](#)

- [선박 등기 개요](#)
- [선박 등기의 전체 조건](#)
- [임시 등기](#)
- [영구 등기](#)

- [재등기\(소유권 변경 또는 선박 개조\)](#)
- [저당권 등록](#)
- [매도 증서 등록](#)
- [등기 폐쇄](#)
- [나용선 계약](#)
- [추가 정보](#)
- [수수료](#)

필요할 수 있는 항목

e-서비스 [선박 등기 수수료 계산기](#)